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3150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2021. 7. 28.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주요내용 】

- 지방소비세(4.3%p) 확충 4.1조원(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 2.3조원 포함)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핀셋지원 0.2조원

나.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10년 간(’22년~’31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22년은 0.75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됨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2년 1월 개정 완료되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을 맡게 되어 기금 조합의 규약 개정이 필요해짐

라. 「지방자치법」 제176조와 제1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17개 시·도의 협의를 통해 입안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편입됨(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 제1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입에 따른 조합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 구성·인원수 변경을 반영함(안 제6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3항)
-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신설 및 재원·용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27조~제35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81조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 별첨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조합회의 의결서 : 별첨
- 4)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 별첨
- 5) 규약 개정 절차
 - 조합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각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제181조제1항)

《 세부사항 》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시·도 통지】
→ 【시·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 작 성 자 : 재정담당관 재정협력팀 김수진 (☎ 2133-688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제2항 중 “20인”을 “23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발전기금 업무”를 “기금총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각 기금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 운용·총칙”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으로 하고,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발전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같은 조 제1항, 제4항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재정지원계정 운용”을 “발전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융자관리계정 운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 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며, 단서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을 “보칙”으로 하고, 제8장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u>지역상생발전기금</u> (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역상생발전기금</u> (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 ----- -----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생략) 1. <u>발전기금</u> 조성 및 관리·운용 2. ~ 4. (생략) <u><신설></u> 5. <u>발전기금</u> 의 운용 성과분석 6. (생략) 7. <u>발전기금</u>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8. <u>발전기금</u>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	제5조(조합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u>조합이 관리하는 기금</u> -----. 2. ~ 4. (현행과 같음) 5. <u>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u> 6. <u>조합이 관리하는 기금</u> -----.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u>조합이 관리하는 기금</u> ----- -----. 9. <u>조합이 관리하는 기금</u> -----

자치단체 제공

9. ~ 11. (생략)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④ (생략)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생략)

1. ~ 4. (생략)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 8. (생략)

② (생략)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

-----.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23인-----.

1. -----기금총괄 업무를 -----기금총괄 업무-----.

2.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

3.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생략)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각 기금 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합장) ① -----

-----제37조의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

② (현행과 같음)

③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

제14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7

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 (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

조-----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기금의 관리·운용 총칙

제15조 (기금의 회계년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6조 (기금의 계정 구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

<신설>

-----.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5인-----

제5장 발전기금 운용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
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
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
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
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
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
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
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
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
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
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
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
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신 설>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 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신 설>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

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

<신 설>

<신 설>

양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

<신 설>

<신 설>

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신 설>

<신 설>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 규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8장 보칙

제29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성과분석) ① -----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현행 ③호와 같음)

제37조(사무위탁) -----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
-----.

제7장 보칙

<삭제>

제38조 ① -----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생 략)

제30조 (생 략)

부칙

<신 설>

항-----.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조합회의(서면) 의결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57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임시회) 서면회의 결과통보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회의-1(2022.2.9.)호와 관련하여, 서면회의로 부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개정(안) 및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조합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제57회 임시회의(서면회의) 의결서 및 서면회의 의건 현황 1부. 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의결서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지역균형발전과장), 기획재정부(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재정혁신담당관), 부산광역시(기획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정책기획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출산보육과장),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균형발전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정책기획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여성가족과장),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인구정책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강원도지사(정책기획관),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북도지사(청년정책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북도지사(대도약청년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남도지사(인구청년정책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인구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사무과장 최도창

사무국장 변인선

조합회의의장

손희준

협조자

시행 조합회의-2

(2022. 2. 18.)

접수

()

우 121-7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253-42호) /

전화 (02)3274-2202 /전송 (02)3274-2123 / bshlovecdc@korea.kr

/ 공개

제57회 조합회의(임시회) 의결서

☐ 부의일자 : 2022. 2. 9.(수)

☐ 부의 안건

- 제1호 안건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제2호 안건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조합회의 위원수 : 20명

☐ 안건에 대한 의견

부 의 안 건 명	계	찬성	반대	미제출
제1호 안건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	20	-	-
제2호 안건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	20	-	-

위와 같이 제57회 임시회의에 서면부의한 안건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 및 찬성을 얻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제10조에 의거 안건을 의결함.

첨부 : 제57회 조합회의(임시회) 의결서 집계현황

2022년 2월 18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2010. 5. 7 제정] [2015. 3. 20 일부개정] [2020. 7.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29>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2.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3.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5.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6. 조합채의 발행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9.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10.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11.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 7. 29〉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제1항의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 및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조합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조합회의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⑥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조합장의 임기는 수탁기관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발전기금의 회계연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7. 29〉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4.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 7. 29>

- ②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방법 등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용자관리계정 운용

제21조(용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② 용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진출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 7. 29〉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방채 등 인수 기준 등) ①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지방채 등 인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 ③ 지방채 인수 기준, 이자율, 인수절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9>

제25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금)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제8장 보 칙

제29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30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계정 운용에 관한 특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계정 중 융자관리계정은「지방세법」제69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 3. 20)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제16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